

마. 국가·유역물관리계획에 맞춰 수립·변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및 공청회 등(안 제10조부터 제15조)

물관리 관련 법률(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소관)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포함시키고, 국가·유역물관리계획의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변경 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절차를 거친 후 제출된 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함

바. 물분쟁 조정절차 및 방법, 조정업무 처리절차 및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직권 조정 물분쟁의 범위 등(안 제16조부터 제26조)

물분쟁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사회적 갈등이 심하여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물분쟁은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물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절차와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와 종료 사유를 규정함

사.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위탁(안 제28조)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osebleue@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 201-7018, 팩스 (044) 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에스티시(신은경) ② (주)호반산업(김진원)

나. 전화번호 : ① 031-704-0857 ② 02-6177-0674

2. 명칭 : 계단식 격자형의 이송교반장치와 연질 및 경질 이중구조의 초속경도막방수층을 이용한 옥상 노출형 복층방수공법(Nano L Spray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의 일반적인 단일 방수재료 및 복합방수공법(도막+시트)과는 달리 도막(연질 Type 초속경도막방수재)과 도막(경질 Type 초속경도막방수재) 즉, 동질 재료를 적용하여 2중의 방수효과를 확보한 공법이다. 또한, 핀홀방지 프라이머를 개발함으로써 방수층 표면의 핀홀 발생을 방지하였으며, 기존의 아스팔트나 합성고분자계 도막 및 시트와 달리 가열하거나 휘발성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온 정량배합(계단식 격자형의 이송교반장치 개발)에 의한 전 공정 기계화 스프레이 시공이 가능한 옥상 노출형 복층 방수공법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전 공정 기계화 시공을 적용한 방수공법으로써 방수층의 핀홀방지 효과를 부여한 프라이머 하도, 콘크리트 바탕면의 거동에 대응이 용이한 연질 Type 초속경방수재와 외부충격 저항성 및 내화학적 등의 내구성을 확보한 경질 Type 초속경방수재를 차례로 복층시공하여 일체화된 이중구조의 중도, 계단식 격자형의 이송교반장치를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상온 정량배합이 가능하며 도막의 미경화 현상을 방지한 옥상 노출형 복층방수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1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